

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정한 『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』 입법예고(1.23.~3.4.)

-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,
119신고 등 온열질환 발생시 조치사항 등 규정

고용노동부(장관 김문수)는 '24.10.22. 개정된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의 시행(’25.6.1.)을 앞두고,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는 『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』 일부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.

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(’24.10.22.)

- * 제39조(보건조치)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(이하 “보건조치”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

7. 폭염·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(신설, 시행일: ’25.6.1.)

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권고사항 중심이었던 “온열질환 예방가이드”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포럼 및 업종별 간담회, 노사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.

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.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<1> 폭염 및 폭염작업 정의 신설

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의 대상이 되는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℃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했다. 체감온도 31℃는 기상청 ‘폭염 영향예보’의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온도이며,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72.7%가 31℃ 이상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.

<2> 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 등에 대한 조치

폭염작업(31℃ 이상)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가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에 온·습도계를 비치하여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한 후 당해연도 말까지 보관해야 한다. 다만, 옥외 이동작업 등 작업환경의 특성상 체감온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「기상법」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.

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는 깨끗한 음료수 등을 충분히 비치하도록 강조하는 한편, 폭염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 방법,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리도록 했다.

만약, 폭염작업 중인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방관서(119)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온열질환 의심자가 방치되어 사망 등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했다.

* 『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』 제5조제1항에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

<3> 폭염작업 시 온열질환 예방 조치

실내 또는 옥외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할 경우,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하도록 했다.

폭염작업이 실내인 경우 ①냉방 또는 통풍을 위한 온도·습도 조절장치 설치, ②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, ③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. 다만, ①온도·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거나 ②작업시간대 조정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폭염상황이 계속되면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.

폭염작업이 옥외인 경우는 ①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, ②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한다. 다만, 작업시간대 조정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폭염상황이 계속되면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.

<4> 폭염작업 시 휴식시간 부여

근로자가 체감온도 31℃ 이상의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내·옥외 모두 적절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.

특히,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기상청 폭염특보에 해당하는 기준 온도인 33℃ 이상일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. 다만, 연속공정 과정에서 후속 작업의 차질, 제품 품질의 저하 등 작업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휴식 부여 대신 개인용 냉방·통풍장치나 보냉장구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.

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“이번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은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.”라면서, “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, 경영 여건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 되도록 준비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(www.moel.go.kr)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(www.mois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담당 부서	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	책임자	팀 장	신욱균 (044-202-8890)
		담당자	사무관 사무관 주무관	나상명 (044-202-8893) 박현건 (044-202-8891) 한진우 (044-202-8895)

〈현 행〉

〈개 정〉

〈신 설〉	⇒ ▪ 정의 ○ (폭염) 근로자에게 열경련·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 ○ (폭염작업) 폭염으로 인해 측정된 체감온도가 31℃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
▪ 사업주의 보건조치 ○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시 적절한 휴식 부여	▪ 사업주의 보건조치 ①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-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·습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 상시 비치 - 폭염·고열작업 시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 방법, 응급조치 요령 등 주지 ② 31℃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- (공통) ①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·보관, ②폭염·고열 작업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 의심 시 소방관서 등에 신고 - (실내) ①냉방·통풍을 위한 온·습도 조절장치 설치, ②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, ③적절한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조치(단, ① 또는 ②의 조치에도 폭염작업 계속 시 ③ 조치) - (옥외) ①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, ②적절한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조치(단, ①의 조치에도 폭염작업 계속시 ② 조치) ③ 33℃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- (원칙)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부여 - (예외) 연속공정 등 작업 성질상 휴식시간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→ ‘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·가동’하거나 ‘개인용 보냉장구 지급·착용’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시 ④ 소금과 음료수 등을 ‘충분히’ 비치 명확화
○ 땀을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음료수 등 비치	

* 산안법 제39조제1항제7호의 시행으로 보건조치 위반 시 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’,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‘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’ 적용

참고2

소규모 사업장 재정지원 품목(예시) * 재정지원 사업공고('25.2.5. 예정)

물품	사진	설명
온·습도계		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(KOLAS) 교정 거친 제품
① 이동식 에어컨 ② 산업용 선풍기	①  ② 	① 국소냉방장치 ② 통풍장치
냉각조끼, 냉각의류	 	찬공기, 액체, 얼음 등 냉매 함유
그늘막		건설 등 옥외 작업장 지원
산업용 냉풍기 (중앙식, 개별식)	 	냉각된 공기를 공급하여 작업장 온도 감소
제트팬	 	작업장의 공기 흐름 원활화
실링팬		

현행	개정안
제558조(정의)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58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“ <u>폭염</u> ”이란 근로자에게 열경련 · 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 도의 기상현상을 말한다.
제559조(고열작업 등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59조(고열작업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“ <u>폭염작업</u> ”이란 폭염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온도 (이하 “ <u>체감온도</u> ”라 한다)가 31℃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 간 작업을 말한다.
제560조(<u>온도·습도 조절</u>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60조(<u>실내 작업에서의 온도·습도 조절 등</u>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사업주는 폭염작업이 실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폭염작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(생 략)

제562조(고열장애 예방 조치)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1.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·습도 조절장치의 설치

2. 작업시간대의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

3.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제562조(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에 대한 조치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이 폭염작업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체감온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·습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상시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③ 사업주는 고열 또는 폭염작업에 따른 온열질환의 증상 및 예방 방법,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, 그 기록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.

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 중인 근로자가 열사병

제566조(휴식 등)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1. 고열·한랭·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
2.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
<신 설>

등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소방관서(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를 포함한다)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66조(휴식 등) ① -----

- 고열·한랭·다습 작업을 하는

<삭 제>

<삭 제>

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옥외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폭염작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작업시간대의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
2.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

<신 설>

제571조(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)
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③ 제2항 및 제56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「기상법」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폭염 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℃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. 다만, 연속공정 등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·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·착용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71조(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)

----- 충분히 갖추어
-----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3의2] <신 설>

체감온도의 측정
(제559조제4항 관련)

1. 체감온도란 「기상법 시행령」 제8조의2제2항 관련 별표1의 체감온도로서 기상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하여 산출하는 온도를 말한다.
2. 체감온도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주된 작업장소의 바닥 면으로부터 약 1.2~1.5미터 높이에서 측정한다.
3. 다만, 제2호에 따른 체감온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「기상법」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다.